#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16 발의연월일: 2020. 7. 15.

발 의 자:이용빈·송갑석·서삼석

전혜숙 · 양향자 · 이정문

이형석 · 강훈식 · 신정훈

강선우 · 김승남 · 이낙연

김성환 · 김회재 · 고영인

노웅래 · 강병원 · 신영대

윤영덕 · 문진석 · 홍정민

권칠승 · 이장섭 · 민형배

강은미・박 정・서동용

윤재갑 · 정태호 · 홍성국

이규민 · 김수흥 · 이병훈

우상호 · 박범계 · 김교흥

조오섭 · 전해철 · 김민기

서영교 · 윤미향 · 설 훈

이워욱・황 희・유동수

양정숙 · 장경태 · 양경숙

인재근 · 강득구 · 소병철

김원이 · 남인순 · 진성준

한병도 · 주철현 · 이타희

박광온 · 이학영 · 민병덕

정청래 · 김민석 · 안규백

유영찬 · 이개호 · 김홍걸

송영길·김남국 의원 (68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5·18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각종 보훈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공법단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회원관리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공헌을 기리고 회원들의 복리증진 및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숭고한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민주화 정신을 고취하려는 것임.

또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설정 및 연장, 수익사업의 정지, 수익사업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수익사업 운영 관련 정보 공개, 재무회계규칙 도입 등 단체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그리고,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하여는 최소 21만원에서 최대 32만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생계가 곤란한 5·18민주유공자(유족)에 대하여는 일시 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금전적 지원이 없어, 생

활수준이 어려운 분들에 대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므로, 5·18민주유공 자(유족) 중 생계곤란자에 대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최 소한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법률 제명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경우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 자매 중 추천된 1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6호신설).
- 다.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 "각 단체"라 함)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제55조 신설).
- 라. 각 단체는 정치활동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63조 신설).
- 마. 각 단체는 법인으로 하고 정관, 회원, 임원 등, 이사회, 총회, 조직 등과 사업범위를 규정함(안 제56조부터 제64조까지 신설).
- 바. 각 단체는 사업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사업의 승인을 국가보훈처장에게 받도록 함(안 제65조 및 제66조 신설).
- 사. 수익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 간을 설정하고, 승인의 유효기간을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 하며, 신청이 있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유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 신설).
- 아. 국가보훈처장은 각 단체가 법률을 위반하여 수익사업을 행한 경우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 신설).
- 자. 각 단체의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체별로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0조 신설).
- 차. 각 단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안 제73조 신설).
- 카. 국가보훈처장은 각 단체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익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단체의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74조 및 제75조 신설).
- 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 신설).
- 파. 각 단체의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매입하고 그 후 해당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건 등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계약 체결일 30일 전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제78조 신설).
- 하. 각 단체의 투명한 재정관리를 위하여 예산 또는 회계 처리를 총리

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 기준에 따르도록 함(안 제82조 신설).

- 거.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 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9조의2 신설).
- 너. 각 단체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명의대여자 및 명의수여자 등 법률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98조제4항 신설).
- 더. 각 단체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을 운영한 자, 회계감사 또는 감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받은 자 등에게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등에게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00조제3항제4호 및 제5호).

### 법률 제 호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5·18민주유공자 중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 자매 중 추천된 1명

제8조제1항제5호 중 "제66조제2항에"를 "제94조제2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67조제1항제1호부터"를 "제95조제1항제1호부터"로 한 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교육지원 및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을 "교육지원과 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제89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신청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67조제1항"을 "제9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67조제1항에"를 "제95조제1항에"로 한다.

제55조 앞의 "제6장 그 밖의 지원"을 "제7장 그 밖의 지원"으로 하고, 제55조를 제84조로 하며,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을 각각 제84조의2 및 제84조의3으로 하고,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를 각각 제85조부터 제

91조까지로 하며, 제64조 앞의 "제7장 보칙"을 "제8장 보칙"으로 하고,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를 각각 제92조부터 제95조까지로 하며, 제67조의2를 제95조의2로 하고, 제68조 및 제69조를 각각 제96조 및 제97조로 하며, 제70조 앞의 "제8장 벌칙"을 "제9장 벌칙"으로 하고, 제70조및 제71조를 각각 제98조 및 제100조로 하며, 제6장(제55조부터 제8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 제55조(법인격) ①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각 단체"라 한다)를 둔다.
  - ② 각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 ③ 각 단체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각 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56조(정관) ① 각 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사무소의 소재지
- 4. 사업에 관한 사항
- 5. 회원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
- 6.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8. 집행기관과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 9. 본부, 지부 및 지회 등 조직에 관한 사항
- 10. 회비·자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2. 임직원에 관한 사항
- 13.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 14. 회칙(會則)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각 단체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57조(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다.
  - 1.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의 회원: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2.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 제7조에 따라 5·18민주유공자의 유 족으로 등록된 사람. 다만,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 자매 중 추천된 1명을 회원으로 한다.
  - 3.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의 회원: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제58조(임원 등) ① 각 단체의 본부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다만,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2명
  - 3. 이사
  - 4. 감사 2명
  - ② 각 단체에 사무총장 1명을 둔다.
  - ③ 회장 · 부회장 ·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④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 ⑤ 회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 ⑦ 감사는 단체의 회계 및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
  - ⑧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단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59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장을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할 수 있다.
  - ②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박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 의결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0조(총회) ① 총회는 회장·부회장·사무총장·이사 및 지부장과 대의 원으로 구성한다.
  - ② 제1항의 대의원의 정수, 선임방법 및 총회의사록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61조(조직) ① 각 단체는 본부·지부 및 지회를 둘 수 있다.
  - ② 각 단체의 본부는 광주광역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에, 지회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둔다.
  - ③ 국가보훈처장은 회원의 수 및 지리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접 도·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부나지회를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2조(지부장 등) ① 각 단체의 지부 및 지회에 지부장 및 지회장 각 1명을 두되, 그 선임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부장과 지회장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 제63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① 각 단체는 특정 정당의 정강(政綱)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 ② 각 단체의 임원 및 지부장, 지회장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 ③ 각 단체의 임원 및 지부장, 지회장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임된다.

제64조(사업) 각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 2.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 3. 5·18민주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 4. 호국정신 함양 및 애국심 고취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한 부대사업 제65조(수익사업) ① 각 단체는 제6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이하 "단체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수익사업을 운영하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수의계약을 할 수있다.
  - 1. 단체등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 2. 단체등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 하는 경우
- 3. 단체등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66조(수익사업의 승인 등) ① 제65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각 단체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제70조에 따른 복지사업심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

리령으로 정하는 주요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을 받은 각 단체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주요 승인사항이 아닌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 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③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수익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
- 1. 각 단체의 자금조달 능력, 사업수행 능력 및 투자규모, 수익사업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각 단체가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 되는 업종 및 품목일 것
- 2. 각 단체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직접 물품을 생산하거나 용역 또는 서비스 등을 직접 수행하여 제공하는 등 직접 운영하는 수익사업일 것
- 3. 수익사업의 수익금이 각 단체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것
- ④ 국가보훈처장은 각 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이 제69조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 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승인사항의 변경, 제2항에 따른 신고절차, 제3항에 따른 승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67조(명의 대여 금지 등) ① 각 단체는 그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

- 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이 법에 따른 각 단체가 아닌 자가 각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8조(승인의 유효기간 등) ① 제66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 승인의 유효기간은 당초 승인받은 유효기간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9조(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66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승인받은 각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기간을 정하여 해당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 2.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2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수익사업을 폐지한 경우
  - 3.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등 제66조제3항의

승인기준을 위반한 경우

- 4.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각 단체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한 경우
- 5. 제73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받은 경우
- 6. 제7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한 경우
- 7. 제7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 8. 제80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한 경우
- 9. 제8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경우
- 10. 수익사업의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수익사업의 운영을 계속한 경우
-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할 때 계약의 상대방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단체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해당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단체는 그 처분을 받은 사실과 내용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

- 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70조(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각 단체는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수익사업의 신설·중단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2.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규모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 3. 수익금 사용계획 및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 4.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및 수익사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단체의 회장이 지명하는 임직원 2명
  - 2. 국가보훈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이 경우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또는 단체에 속하는 사람을 지명하거나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
    - 가.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1명
    - 나. 변호사 1명 이상
    - 다. 공인회계사 1명 이상
    - 라. 그 밖에 수익사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심의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수익 사업의 수익성·성장성·안정성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야 한다.
- ⑥ 각 단체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운영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⑦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필 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71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 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72조(수익금의 사용) ①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단체 회원의 복지, 단

- 체의 운영, 그 밖에 단체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되, 회원의 복 지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② 각 단체는 다음 연도의 수익금 사용계획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심의를 받아야 하고, 수익금 사용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계획이 제1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목적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73조(회계감사 등) ① 각 단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해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중 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공인회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 ② 공인회계기관은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각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단체는 회계감사 결과를 회계감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를 고려하여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④ 국가보훈처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65조제1항에 따라 각 단체가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4조(실태조사) ① 국가보훈처장은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단체의 수익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관계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75조(정보공개) ① 국가보훈처장은 각 단체의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단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180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1. 제73조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
  - 2. 제82조의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 3. 그 밖에 수익사업 운영 현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의 내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76조(청문) 국가보훈처장은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또는 수익사업의 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

문을 하여야 한다.

- 제77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78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각 단체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각 단체에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각 단체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법령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그 내용과 조건 등계약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각 단체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처분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건 등 계약에 관한 사항 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계약을 체결하 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제79조(시정조치) 국가보훈처장은 각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법률을 위반하거나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2. 수익금을 수익금 사용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경우
  - 3. 이 법 또는 총리렁으로 정하는 사항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 제80조(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① 국가보훈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각 단체의 회계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81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국가보훈처장은 각 단체의 건 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각 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장부 나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제82조(회계규칙) 각 단체는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제83조(해산사유) 각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 1.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사유의 발생
  - 2. 총회의 해산 결의
- 제8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9조의2(생활조정수당)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1. 5 · 18민주유공자
  - 2.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 순위자 1명
  - ② 제1항제2호를 적용할 경우 유족 중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금"은 "생활조정수당"으로 본다.
  - ③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신청·조사·질문 등 수급권 확인·심사를 위한 국가보훈처장의 권한과 금융정보제공 및 생활조정수당 신청의촉진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및 권리의 보호와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생활조정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종전의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금 및 제55조의 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보조금, 제84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관한 보조금 및 제89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으로 한다.

제93조(종전의 제65조)제1항 중 "제64조제1항제2호에"를 "제92조제1항 제2호에"로, "제64조에도"를 "제92조에도"로 한다.

제95조(종전의 제67조)제5항 중 "제66조제2항에"를 "제94조제2항에"로 한다.

제95조의2(종전의 제67조의2)제1항제9호 중 "제55조의2에"를 "제84조의2에"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60조에"를 "제89조에"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제64조에"를 "제92조에"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제66조에"를 "제94조에"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제67조에"를 "제95조에"로 한다.

10의2. 제89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및 수급권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

제98조(종전의 제70조)제1항제2호 중 "제55조의2제2항"을 "제84조의2 제2항"으로, "제60조제3항"을 "제8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67조의2제3항을"을 "제95조의2제3항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68조제1항을"을 "제96조제1항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6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 2.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각 단체의 명의를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각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 여 수익사업을 한 자

제9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양벌규정) 각 단체의 대표자나 각 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각 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8 조제4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각 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각 단체 또는 개 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조(종전의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4호 중 "제68조제2항을 위반한"을 "제8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수익사업을 운영한 자
- 2. 제73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받은 자
- 3. 제7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제80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 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한 자
- 4. 제78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5. 제82조에 따른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자
- 5. 제9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단체의 명칭 또는 단체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위원회)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 시행 전 「민법」제3 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사단법인 5·1 8민주유공자유족회,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이하 "구법인"이라 한다)의 해산과 제55조제1항에 따른 제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 "신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1개월이내에 신법인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설립준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제57조 각 호의 회원을 대표하는 1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설립준비위원회는 신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설립준비위원회는 신법인의 임원이 선임되면 지체 없이 설립등 기를 한 후에 신법인의 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⑤ 설립준비위원회 및 설립준비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 ⑥ 신법인의 설립준비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예산에서 부담한다.
- 제3조(법인의 해산 및 청산의 특례) 구법인은 이 법에 따른 신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 제4조(수익금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익금 사용계획은 2021년도 수익금 사용계획부터 적용한다.
- 제5조(수익사업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은 2020년도 수익사업 운영에 대한 회계감사

부터 적용한다.

- 제6조(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에 따른 신법인은 종전의 구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법인이 포괄 승계하는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종전의 구법인 명의는 이 법에 따른 신법인의 명의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라 신법인이 승계할 재산의 가액은 신법인의 설립등기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④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관하여 구법인이 한 행위는 신법인이 한 행위로, 구법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신법인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 제7조(수익사업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구법인이 종전에 운영하고 있는 수익사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은 제6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법인이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으로 본다.
-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구법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신법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 립에 관한 법률 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는 5.18 민주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1. ~ 5. (생략) 6.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5·18 <신 설> 민주유공자 중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 자매 중 추천 된 1명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신상 변동의 신고 등) ① | 제8조(신상 변동의 신고 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대 상자는 5·18민주유공자, 그 유 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사 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6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 5. 제94조제2항에-----람이 된 경우

6. <u>제67조제1항제1호부터</u> 제4호 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7. ~ 9. (생략)

② • ③ (생 략)

제9조(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①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 다. 다만, 제12조의3제1항에 따 른 교육지원 및 제55조의2제2 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신청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예우를 받 을 권리가 발생한다.

②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u>제67조제1항</u> 또는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5·18민주유공자 본인이 제8조

b. <u>세90소세1양세1오구더</u>
7. ~ 9.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①
교육지원과 제84조의2제2
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제89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신청하는
②
<u>제95조제1항</u>
•

제18제2모 모든 <u>제07</u>도제18 <u>에</u> 해당하면 그 가족이 예우를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③ ~ ⑤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1항제2호 또는 <u>제67조제1항</u> -----<u>제95조제1항</u> <u>에</u> 해당하면 그 가족이 예우를 <u>예</u>-----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 제55조(법인격) ① 5·18민주유공

  자와 그 유족이 친목을 도모하
  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
  하여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
  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 "각 단
  체"라 한다)를 둔다.
  - ② 각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 ③ 각 단체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 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각 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56조(정관) ① 각 단체의 정관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 정하여야 한다.
  - 1. 목적
  - <u>2. 명칭</u>

- 3. 사무소의 소재지
- 4. 사업에 관한 사항
- 5. 회원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
- 6.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8. 집행기관과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 9. 본부, 지부 및 지회 등 조직 에 관한 사항
- 10. 회비·자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2. 임직원에 관한 사항
- 13.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 14. 회칙(會則)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각 단체가 정관을 변경하려 면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 아야 한다.
- 제57조(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단 체의 회원이 될 수 있다.
  - 1.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의회원: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u><신</u>설>

## 사람

- 2.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 제7조에 따라 5·18민주유 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 다만,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 자매 중 추천된 1명을 회원으로 한다
- 3.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의회원: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사람
- 제58조(임원 등) ① 각 단체의 본 부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다만, 이사의 수는 정관 으로 정한다.
  - 1. 회장 1명
  - <u>2. 부회장 2명</u>
  - <u>3. 이사</u>
  - 4. 감사 2명
  - ② 각 단체에 사무총장 1명을

     둔다.
  - ③ <u>회장·부회장·이사 및 감</u> 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④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 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 ⑤ 회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

<신 설>

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 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 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 ⑦ 감사는 단체의 회계 및 회 계와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
- ⑧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를받아 단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9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 장·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장을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박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수 있다. 이 경우 의결사항은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0조(총회) ① 총회는 회장·부 회장·사무총장·이사 및 지부장

<신 설>

<u><신</u>설>

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대의원의 정수, 선임방법 및 총회의사록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1조(조직) ① 각 단체는 본부· 지부 및 지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단체의 본부는 광주광역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에, 지회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둔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회원의 수 및 지리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 접 도·시·군·구를 통합하여 하 나의 지부나 지회를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62조(지부장 등) ① 각 단체의 지부 및 지회에 지부장 및 지 회장 각 1명을 두되, 그 선임방 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부장과 지 회장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제63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①
 각 단체는 특정 정당의 정강

(政綱)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 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 ② 각 단체의 임원 및 지부장, 지회장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회계책 임자가 될 수 없다.
- ③ 각 단체의 임원 및 지부장, 지회장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에는 해임된다.

<u>제64조(사업) 각 단체는 다음 각</u> 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u>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u> 친목도모
- 2.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 3. 5·18민주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 <u>4. 호국정신 함양 및 애국심 고</u> <u>취</u>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한 부대사업

제65조(수익사업) ① 각 단체는

<신 설>

제6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이하 "단체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한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1. 단체등이 5·18민주화운동부 상자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을 구매하는 경우
- 2. 단체등이 5·18민주화운동부 상자회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 3. 단체등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66조(수익사업의 승인 등) ①
제65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각 단체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제70조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리령

<신 설>

- 으로 정하는 주요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을 받은 각 단체는 같은 항 후단 에 따른 주요 승인사항이 아닌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 가보훈처장에게 변경사항을 신 고하여야 한다.
- ③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수익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
- 1. 각 단체의 자금조달 능력,
  사업수행 능력 및 투자규모,
  수익사업 운영 상황 등을 고
  려하여 각 단체가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및
  품목일 것
- 2. 각 단체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직접 물품을 생산하거나 용역 또는 서비스 등을 직접 수행하여 제공하는 등 직접 운영하는 수익사업일 것
- 3. 수익사업의 수익금이 각 단

 체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

 될 것

④ 국가보훈처장은 각 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이 제69조제 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 우 그 취소 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승인사항의 변경, 제2항에 따른 신고절차, 제3항에 따른 승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67조(명의 대여 금지 등) ① 각 단체는 그 명의를 타인에게 대 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② 이 법에 따른 각 단체가 아 난 자가 각 단체의 명의를 사 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8조(승인의 유효기간 등) ①
제66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의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신 설>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 승인의 유효기간은 당초 승인받은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유효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총 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 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 다.
-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9조(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등)
  -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66조제1 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승인받 은 각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수익사업의 정지 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 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 법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 2.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2년 이 상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수익사업을 폐지한 경우
- 3.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직접운영하지 아니하는 등 제66조제3항의 승인기준을 위반한경우
- 4.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각 단체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한 경우
- 5. 제73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
   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로 받은 경우
- 6. 제7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 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한 경우
- 7. 제7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 8. 제80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
  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한
  경우
- 9. 제8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

 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

 로 한 경우

- 10. 수익사업의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수익사업의 운영을 계속한 경우
-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총리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할 때 계약의 상대방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단체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해당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단체는 그 처분을 받은 사실과 내용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70조(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각 단체는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수익사업의 신설·중단 및 폐 지에 관한 사항
  - 2.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규모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 3. 수익금 사용계획 및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 4.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및 수익사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 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단체의 회장이 지명하는 임직원 2명
  - 2. 국가보훈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이 경우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또는 단체에 속 하는 사람을 지명하거나 위촉 해서는 아니 된다.

<u>가.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u> 1명

<u>나. 변호사 1명 이상</u> 다. 공인회계사 1명 이상

라. 그 밖에 수익사업 관련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람

-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심의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 는 수익사업의 수익성·성장성· 안정성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⑥ 각 단체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운영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할 수있다.

①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71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 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 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2조(수익금의 사용) ① 수익사 업의 수익금은 단체 회원의 복 지, 단체의 운영, 그 밖에 단체 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 되, 회원의 복지사업에 우선 사 용하여야 한다.

② 각 단체는 다음 연도의 수익금 사용계획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심의를 받아야 하고,수익금 사용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계획이 제1항에 따 른 수익금 사용목적에 맞지 아 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73조(회계감사 등) ① 각 단체 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해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 내에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중 심의위원 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이하이 조에서 "공인회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 ② 공인회계기관은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각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단체는 회계감사결과를 회계감사 종료 후 15일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를 고려하여 수 익사업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 시할 수 있다.
- ④ 국가보훈처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65조제1항에 따라 각 단체가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한다.

제74조(실태조사) ① 국가보훈처 장은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단 체의 수익사업 운영 실태를 조 사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

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 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관계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등 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 령으로 정한다.

제75조(정보공개) ① 국가보훈처 장은 각 단체의 수익사업 운영 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단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 후 180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 여야 한다.

- 1. 제73조에 따른 회계감사보고 <u>서</u>
- 2. 제82조의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신 설>

- 3. 그 밖에 수익사업 운영 현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의 내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76조(청문) 국가보훈처장은 제6 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또는 수 익사업의 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77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 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78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과 복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 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에도 불구하 고 각 단체에 국유재산이나 공 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 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각
  - 단체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

하여 필요하면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에도 불구하고 각 단체에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각 단체에 국유 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 각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총리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 산의 관리·처분과 관련된 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법 령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 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그 내용과 조건 등 계약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 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u>④ 각 단체는 제1항에 따라 매</u> <u>입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u>

<신 설>

을 처분(매각, 교환, 양여, 신 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소 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 건 등 계약에 관한 사항을 총 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 가보훈처장에게 계약을 체결하 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보고하 여야 한다.

제79조(시정조치) 국가보훈처장은 각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 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법률을 위반하거나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수익사업을운영하는 경우
- 2. 수익금을 수익금 사용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경우
- 3. 이 법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나 정관을 위반한경우

제80조(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① 국가보훈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
여금 각 단체의 회계사항을 조
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신 설>

<신 설>

제6장 그 밖의 지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한다.

제81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국가보훈처장은 각 단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장부나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있다.

제82조(회계규칙) 각 단체는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총리령으 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83조(해산사유) 각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 1.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사유의 <u>발생</u>
- 2. 총회의 해산 결의제7장 그 밖의 지원

제55조(양로지원) (생 략)

제55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84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생 략)

제55조의3(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84조의3(보훈재가복지서비스) (생 략)

제56조(양육지원) (생 략)

제57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생 략)

(생 략)

제59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생 략)

제60조(주택의 우선 공급) (생 략)

<신 설>

제84조(양로지원) (현행 제55조와 같음)

(현행 제55조의2와 같음)

(현행 제55조의3과 같음)

제85조(양육지원) (현행 제56조와 같음)

제86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현 행 제57조와 같음)

제58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제87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현행 제58조와 같음)

> 제88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현 행 제59조와 같음)

> 제89조(주택의 우선 공급) (현행 제60조와 같음)

제89조의2(생활조정수당)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5 · 18민주유공자

2.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 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② 제1항제2호를 적용할 경우

유족 중 같은 순위가 2명 이상 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 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 금"은 "생활조정수당"으로 본다. ③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신청· 조사 · 질문 등 수급권 확인 · 심 사를 위한 국가보훈처장의 권 한과 금융정보제공 및 생활조 정수당 신청의 촉진 등에 관 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의2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

- ④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및 권 리의 보호와 지급정지 등에 관 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2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 생활조정수당은 월액으로 하 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 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기념·추모사업의 추진) 제90조(기념·추모사업의 추진) (생략)

(현행 제61조와 같음)

제62조(시설물 설치 등의 특례)제91조(시설물 설치 등의 특례)(생 략)(현행 제62조와 같음)

제7장 보칙

제64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제16조 및제16조의2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등을 포함한다),제30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직업능력개발훈련비,제31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지원비,제34조에 따른 의료지원비,제48조에 따른 보조금 및제55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③ (생략)

제65조(반환의무의 면제) ① 국가 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예우 를 받은 사람이 제64조제1항제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예 우를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 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1012
(현행 제62조와 같음)
<u>제8장</u> 보칙
제92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①
<u>보조금, 제84조의2에</u> 따른
요양지원에 관한 보조금 및 제8
9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u>제93조</u> (반환의무의 면제) ①
제92조제1항제
<u> 2호에</u>

제6	4조에도	불	구하고	그가	받
은	학습보조	(비	등을	환수하	가기
o}1	니할 수 <u>9</u>	있다			

② (생 략)

제66조(예우의 정지) (생략)

<u>제67조</u>(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의 배제) ① ~ ④ (생 략)

⑤ 국가보훈처장은 <u>제66조제2</u> <u>항에</u> 따라 예우를 정지하거나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이 법 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 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7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지방세에 관한자료, 소득·재산에 관한자료, 숙덕·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u>제92조에도</u>
<u>.</u>
② (현행과 같음)
<u>제94조</u> (예우의 정지) (현행 제66
조와 같음)
<u>제95조</u>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의 배제) ① ~ ④ (현행과 같
<u>ㅇ</u> )
⑤ <u>제94조제2</u>
<u> </u>
제95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 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 ~ 8. (생략)
- 9. <u>제55조의2에</u> 따른 요양지원 에 대한 보조
- 10. <u>제60조에</u>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

<신 설>

- 11. <u>제64조에</u> 따른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
- 12. <u>제66조에</u> 따른 예우의 정지
- 13. <u>제67조에</u> 따른 법 적용 대 상으로부터의 배제

② ~ ④ (생 략)

<u>제68조(5·18</u>민주유공자 지원단체 <u>조</u>직 등의 제한) (생 략)

<u>제69조</u>(위임 및 위탁) (생 략)

제8장 벌칙

<u>제70조(</u>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u>제98조(</u>벌칙) ① -----

,
1. ~ 8. (현행과 같음)
9. <u>제84조의2에</u>
10. <u>제89조에</u>
10의2. 제89조의2에 따른 생활
조정수당의 지급 및 수급권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
한 조사
11. <u>제92조에</u>
12. <u>제94조에</u>
13. <u>제95조에</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 <u>96조</u> (5·18민주유공자 지원단체
조직 등의 제한) (현행 제68조
와 같음)
<u>제97조</u> (위임 및 위탁) (현행 제69
조와 같음)
제9장 법칙

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	원
o) <del>2</del>	하의 벌금	금에 초	하다.		

- 1. (생략)
- 2. 제12조의5제6항(제55조의2제 2항 후단 및 제60조제3항 후 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 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 람
- 3. <u>제67조의2제3항을</u>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사용·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 ② (생략)
- ③ <u>제68조제1항을</u>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현행과 같음)
2제84조의2제
2항제89조제3항
<u> </u>
_
3. 제95조의2제3항을
② (현행과 같음)
③ 제96조제1항을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제66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받
<u>게 한 자</u>
2.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각

<u>제71조</u>(과태료) ① (생 략)

<신 설>

단체의 명의를 대여하여 수익 사업을 하게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각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한 자

제99조(양벌규정) 각 단체의 대표
자나 각 단체 또는 개인의 대
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이 각 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
에 관하여 제98조제4항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
는 외에 각 단체 또는 개인에
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
과한다. 다만, 각 단체 또는 개
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
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u>제100조</u>(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 인을 받지 아니한 수익사업을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3. (생 략)
-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한 자

## 운영한 자

- 2. 제73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
   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로 받은 자
- 3. 제7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 사 또는 제80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방 해·기피한 자
- 4. 제78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 산·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로 보고한 자
- 5. 제82조에 따른 재무·회계에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 <u>③</u> -----
- 1. ~ 3. (현행과 같음)
- 4. <u>제8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u> <u>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u> <u>로 한---</u>
- 5. 제9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단체의 명칭 또는 단체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 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부 과·징수한다.

<u>ই</u>	<u> 가</u>		
<u>4</u>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u>정</u>	<u>에</u>		
	·		